

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[2003. 12. 15] 조례 제3호

- 전문개정 2006. 8. 24 조례 제 201호
- 개정 2007. 5. 11 조례 제 229호
- 개정 2008. 3. 7 조례 제 279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- 개정 2008. 3. 14 조례 제 282호
(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)
- 개정 2008. 8. 6 조례 제 293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- 일부개정 2010. 8. 6 조례 제 352호
- 일부개정 2011. 1. 7 조례 제 368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- 일부개정 2012. 12. 21 조례 제 457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- 일부개정 2013. 5. 16 조례 제 475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- 일부개정 2013. 8. 1 조례 제 491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- 일부개정 2015. 7. 1 조례 제 595호
- 일부개정 2016. 12. 23 조례 제 713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- 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 845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- 전부개정 2021. 12. 28 조례 제1016호
- 일부개정 2022. 10. 13 조례 제1046호
- 일부개정 2023. 7. 7 조례 제109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 위원 정수)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(定數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〈개정 2022. 10. 13, 2023. 7. 7〉

1. 기획행정위원회: 6명 이하
2. 산업건설위원회: 6명 이하

제3조(상임위원회 위원) ① 증평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될 수 있다.

② 상임위원은 증평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(選任)한다.

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4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기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(補任)되거나 개선(改選)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.

② 상임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「증평군의회 기본 조례」 제 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상임위원회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즉시 그 위원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2. 10. 13>

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⑥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,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 위원(이하 “특별위원”이라 한다)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,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(互選)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,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23. 7. 7>

제7조(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등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4조를 준용한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등 위원장의 선거·임기 등에 관하여는 상임위원장의 선거 등에 관한 제5조제2항,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8조(부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.

②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소위원회) 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④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21. 12. 28 조례 제1016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0. 13 조례 제104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증평군 의회위원회 조례

부칙(2023. 7. 7 조례 제109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